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14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문대림 · 정춘생 · 김한규
진선미 · 최민희 · 허성무
유동수 · 안호영 · 김준형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섬 지역으로 항공·해상 운송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임. 특히 항공은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임.

그러나 고유가·전쟁·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급등할 경우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제4조제5항 및 제435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섬 지역 특성과 대체 교통수단 부재로 인한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도민의 국내항공 노선 이용환경 개선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편 제7장 제2절에 제4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5조의2(도민의 항공교통 이용 보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항공노선 이용에 필요한 지원, 항공운임 및 요금의 할인·환급·바우처 지급 등을 통한 부담 완화, 결항·지연 등으로 인한 이동지원 및 항공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민의 항공교통 이용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민의 항공교통 이용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